- Q>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'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' 요건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,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한지?
- □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(⇒ 졸업예정자는 '대학 재학생'임에 유의)
 -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모두 지원제외 청년(Ⅲ-2. 지원제외 청년, 지침 p.21)이므로, 취업애로청년 유형 ①~⑨에 해당하더 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
 - * 취업애로청년 유형②,③에는 원천적으로 해당할 수 없음
 - 다만, 방통대·사이버대·야간대학,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는, '지원제외 청년의 예외(Ⅲ-2. 지원제외 청년, 지침 p.21)'에 해당 하므로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함
 - 단, 현재 '재학생'으로 최종학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, 최종 학력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유형 ②와 ⑨로는 참여가 불가함
- □ 대학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
 - 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이 아니므로, 어떤 유형의 대학(원)을 졸업하였는지와 무관히 지원제외 청년(지침 p21. 2-4. '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')에 해당하지 않음
 - 다만, 어떤 유형의 대학을 졸업하였든,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
 □만인 자는 취업애로청년 유형②*와 ⑨로는 참여가 불가함
 - * 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, '고졸 이하 학력' 요건으로도 참여 불가
- □ 학점은행제 수강자의 경우
 - 학점은행제는 '입학'과 '졸업'의 개념이 없으므로, 학점은행제를
 통해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거나, 현재 수강 중이더라도
 '대학 재학생'으로 보지 않음

- 따라서, 지원제외 청년(지침 p21. 2-4. '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')에 포함되지 않으며,
 - * 지침(p.21)에 기재된 '학점은행제' 문구는 삭제 예정
- '졸업예정자' 또는 '졸업 후 3개월 미만·이상인 자' 등을 판단하지 않음
- 단, 학점은행제를 통해 (전문)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에는,
 (전문)학사를 인정하여 취업애로청년 요건②로는 참여가 불가함
 - *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학력인정)

대학 유형별, 재학 유형별 참여가능여부 정리

| | 일반대학 | 방송통신· | 대학원 | 학점은행제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20117 | 사이버대등 | 7176 | 7 0 - 0 11 |
| 일반재학생 | 참여불가 (Ⅲ-2.지원제외 청년) | 참여가능 | 참여가능 | '재학'중인 |
| | | (Ⅲ-2. | (Ⅲ-2. | 것으로 보지 |
| | | 지원제외의 | 지원제외의 | 않으므로 |
| | | 예외) | 예외) | 참여가능 |
| | | 요건 ② , ⑨ 로는 | 요건 ② , ⑨ 로는 | '졸업예정'의 |
| 졸업예정자 |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개념이 |
| | | 다른 요건으로 | 다른 요건으로 | 없으므로 |
| | | 참여가능 | 참여가능 | 참여가능 |
| | 요건 ②,③ 로는 | 요건 ②,③ 로는 | 요건 ②,③ 로는 | |
| 졸업 후 3개월 |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<졸업이라는 |
| 미만인 자 | 다른요건으로 | 다른요건으로 | 다른요건으로 | 개념은 없으나, |
| | 참여가능 | 참여가능 | 참여가능 | 학위수여시> |
| | 요건 ② 로는 | 요건 ② 로는 | 요건 ② 로는 | 요건 ⊘ 로는 참여불가 |
| 졸업 후 3개월 | ☆선 생 모는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참여불가 | 다른요건으로 |
| 이상인 자 | 다른요건으로 | 급역물기 다른요건으로 | 다른요건으로 | 시 |
| 706 7 | 시는표선으로 참여가능 | 시는표선으로 참여가능 | 하는표선으로 참여가능 | 0 71710 |
| | 0 4/10 | 04/10 | M/10 | |

[※] 기타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